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15 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민형배·강유정·손명수

김재원 • 조계원 • 이성윤

이해민 · 장철민 · 강훈식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지(校地)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전동 킥보드,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) 이용이 활발합니다.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합니다.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했습니다. 이용자·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여론이 높습니다.

「도로교통법」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.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,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합니다.

이에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·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.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,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,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.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0조의5 신설).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5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관리) ① 교육시설의 장(「고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(이하 "개인형 이동장치"라 한다)의 이용자 준수사항, 거치구역, 충전방법, 견인·보관 및 비용 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10조의5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관리) ① 교육시설의 장 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(이하 "개인형이동장치"라 한다)의 이용자준수사항, 거치구역, 충전방법, 견인・보관 및 비용 징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정을요구하는등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.